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7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김현정·박홍배·이기헌

부승찬 • 전재수 • 손명수

이개호 · 정태호 · 김기표

강준현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채무자회생법")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,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,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(發起人) 및 이사의 결격사유로 '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'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 으므로,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

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호 중 "제4조제2항 각호의 1"을 "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중 "제4조제2항 각호의 1"을 "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42조제2항제3호 중 "제4조제2항 각호"를 "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 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발기인) ① (생 략)	제4조(발기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	②
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	<u><삭 제></u>
권되지 아니한 자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이사의 자격) 다음 각호의	제12조(이사의 자격)
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	
수 없다.	
1. <u>제4조제2항 각호의 1</u> 에 해당	1.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
하는 자	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감사의 자격) ① (생	제17조(감사의 자격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	2
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	
1. <u>제4조제2항 각호의 1</u> 에 해당	1. <u>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</u>
하는 자	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자산관리회사의 등록) ①	제42조(자산관리회사의 등록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1.·2. (생략)
- 3. 임원은 <u>제4조제2항 각호</u>의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것

4.·5. (생략)

③ ~ ⑥ (생 략)

2
1.·2. (현행과 같음)
3제4조제2항제1호 또
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
<u> 어느 하나</u>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